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KB 금융지주(“KB 금융지주”)는 상법 제 360 조의 2 내지 제 360 조의 10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 62 조의 2 등에 의거 2016년 8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KB 금융지주 보통주식과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의 보통주식을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 2016년 8월 2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 KB 금융지주는 현대증권과 상법 제 360 조의 2 및 제 360 조의 10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 62 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가. 목 적

KB 금융지주 이외의 현대증권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KB 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KB 금융지주 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KB 금융지주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서 KB 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현대증권은 KB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식의 배정

KB 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2016년 10월 19일 0시)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현대증권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KB 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907312주의 비율로 KB 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KB 금융지주의 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다. KB 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위 주식교환일(2016년 10월 19일 0시)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는 현대증권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포괄적 주식 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현대증권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KB 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의 총수가 KB 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 360 조의 10 제 1항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같음함.

마.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16년 10월 4일

바. 주식교환일 : 2016년 10월 19일

사. 기타사항

-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 본 주식교환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 호 : 현대증권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현대증권 빌딩

####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2016년 8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KB금융지주의 주주 중 금번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양식 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 ① 명부주주

2016년 8월 22일까지 KB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국민은행 여의도본점 7층) KB금융지주 IR부 Tel. 02-2073-2845)

##### ②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2016년 8월 22일까지 KB금융지주의 위 제출처로 직접 제출

#####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 360조의 10 제 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상법 제 360조의 10 제 5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본건 주식교환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임.

201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 2가)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윤종규

※ 2016년 9월 1일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공고입니다.